

백암아트홀 대관 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백암아트홀이 관리, 운영하는 백암아트홀(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기본 시설 및 부대설비의 대관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관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대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라 함은 대관자가 공연, 연습, 녹음, 행사 또는 녹화 등을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극장의 시설, 설비 및 부수 장비를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관자라 함은 극장의 대관 사용승인을 받고 공연장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극장은 기본시설, 부대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3조 (대관의 범위)

대관의 범위는 해당 대관이 이행되는 현재 상태와 조건의 "극장" 내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단, 대관자가 "극장"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의 상태와 조건이 합당치 않을 경우는 외부 시설과 장비를 사전에 "극장"과 협의하여 반입,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대관의 종류)

1.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신청 및 승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정기대관 : 각 연도별, 혹은 분기별 기준(상반기: 1월~6월, 하반기: 7월~12월)으로 "극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 접수하여 승인하는 장기대관(1개월 이상의 공연)을 말하며 필요한 경우, 차기년도 이후 시기의 일정도 정기대관으로 모집할 수 있다.
 - ② 수시대관 : 정기대관 일정에 잔여기간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지 않고 신청을 접수 받아 승인하는 단기대관(1개월 미만의 공연)을 말하며 "극장"이 지정한 일정 기간을 수시대관으로 모집할 수 있다.
2. 대관은 목적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① 공연대관 : 해당 대관이 처한 현재 상태와 조건의 기본시설과 부대설비를 사용하여 실제적인 공연을 하기 위한 대관을 말한다.
 - ② 준비대관 : 공연 전 제반 무대설치와 조정을 하기 위한 준비기간의 대관을 말한다.
 - ③ 철수대관 : 공연 후 설치된 제반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래의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대관을 말한다.
 - ④ 촬영 및 녹음 대관 : 음반 레코딩 작업 및 방송, CF, 영화 촬영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 ⑤ 행사대관 : 공연과 촬영 및 녹음대관이 아닌 모든 대관을 말한다.

제5조 (대관 신청)

대관자는 대관 신청 시, '공연장대관신청서(소정양식)', '공연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하며 공연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추가 일정 및 부대설비 사용신청은 '부대시설사용신청서'로 신청한다.

1. 정기대관 신청기간 : 공연일정 2년 전 부터 "극장"이 정한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2. 수시대관 신청기간 : 정기대관 일정을 제외한 잔여일수 발생 시 "극장"이 정하는 시기에 절차에 따라 신청한다.

제6조 (대관 신청 제한)

1. 현행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이나 행사

2. "극장"의 시설 및 설비, 또는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공연이나 행사
3. 특정한 종교나 정치의 왜곡된 홍보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연이나 행사
4. 기타 "극장"의 심의결과에 의해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연이나 행사

제7조 (대관심의 및 승인)

1. 대관심의를 "극장"의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시행한다.
2. 대관신청서 접수 마감 후, 신청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과 (대관 승인서, 대관불가 통지서)를 대관 신청인에게 서면 혹은 전화로 통보한다.

제8조 (대관승인 기준)

대관심의위원회는 공연작품의 내용과 단체의 수준, 극장 운영방침을 고려하여 대관승인의 기준을 결정한다.

제9조 (대관계약 체결)

대관 승인을 받은 대관신청자는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백암아트홀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대관료)

1. 대관료는 매년, 극장 유지 및 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주)백암아트홀에서 정한다.
2. 장기 대관일 경우, 대관자는 총 대관료의 30%를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연 시작 90일전까지 중도금으로 40%, 공연 시작 6주 전까지 잔금 30%를 완납하여야 한다.
수시대관 및 단기대관의 경우는 계약체결 시, 총 대관료의 100%를 계약서에 지정된 일자에 완납하여야 한다.
3. 공연진행을 위한 스텝회의 후 산정된 부대설비 사용료는 (주)백암아트홀이 지정한 기한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부대설비의 추가 신청은 "극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하며 추가되는 부대설비 사용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5. 대관일정 변경 및 연장공연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되는 대관료의 경우, (주)백암아트홀이 정하는 요율을 적용하며 해당공연 일주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6. 계약 후, 계약서에 기재한 정한 기일 내에 대관자가 대관료를 미납했을 경우, (주)백암아트홀은 해당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7. 대관자가 부대설비사용료 및 추가대관료 등을 미납했을 경우, 공연 중이라도 "(주)백암아트홀은 대관을 중지하고 취소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관자에게 부여된다.
8. 대관자와 (주)백암아트홀의 공동기획일 경우, 대관료 산정 및 납부방식은 별도 협의에 따른다.
9. 행사대관 및 기타 대관(녹음 및 촬영대관)의 경우 역시 계약체결과 함께 대관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11조 (대관료 반환)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다음의 상황일 경우에 한해 "극장"과 충분한 협의 후에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극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 (공연진행 준수사항)

1. 대관자는 대관 기간 중 "극장"의 시설, 설비와 관련하여 (주)백암아트홀이 요구하는 안전수칙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대관자는 공연 3주 전까지 무대기술팀에 '무대설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연 2주 전까지 스텝회의에 참석하여 공연진행에 관한 제반 사항 등을 협의해야 한다. 또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공연진행을 위하여 대관자는 무대감독과 하우스 매니저의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한다.
3. 대관자는 공연 개시일까지 (주)백암아트홀이 요구하는 수량의 포스터 및 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한다.
4. 대관자 측 관련스텝, 출연자 등은 반드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위반 시 극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5. 공연장비 반입은 "극장" 무대기술팀과 사전 협의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6. 공연 종료 후 시설 철거 시에 발생하는 환경정리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별도의 예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 (장치의 설치 및 철거)

1. 대관자는 "극장"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반입하여 설치할 경우, "극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며 시설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설비를 철거, 원상복구 한 후 "극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대관자가 반입하는 모든 장치 및 설치물은 방염처리가 선결되어야 한다.
3. 무대에서는 인화성 물질, 용접작업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금지한다.
4. 공연장비 외 화환 등의 하우스 내 반입은 금지하며 극장 입구에 화환 등을 설치할 경우 모든 처리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5. 공연을 위해 대관자가 설치한 시설물과 장치는 종료 직후, 즉시 철거하고 "극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철거를 지연할 경우, "극장"은 임의로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모든 소요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한다.

제14조 (양도 및 전대 금지)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 (대관 일정 변경 금지)

대관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일정 변경을 **정식 공문으로** 신청한 연후에 (주)백암아트홀의 승인을 받아야만 대관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 (시설 사용 및 설비 변경 금지)

1. 대관자는 "극장" 객석 및 로비, 무대에 공연과 무관한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으며 공연과 관련된 홍보, 판촉 설치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극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극장"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무대장치물의 경우 필히 방염처리를 하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공연기간 중 판촉, 사인회, 리셉션 등을 개최할 때는 "극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장소 사용료를 공연 시작 최소 2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4. 대관자는 "극장"이 보유한 시설, 악기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반드시 "극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연 종료 후 시설 철거 및 극장 정리 시에 발생하는 환경정리 비용(화환 포함)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6. 야간 사용은 당일 24:00시까지로 정하고, 그 이후는 철야로 간주한다. 이에 대한 야간 및 철야 사용 시설(리허설 포함)은 반드시 사용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7. 심야대관(리허설 포함)은 사용료 내역을 참조하며 별도 협의를 거쳐 대관료 기준표에 의해 "극장"이 정한 일자에 **납입**한다.

제17조 (공연 내용 변경 금지)

1. 대관자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공연물 자체를 변경하여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대관자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극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극장"은 이 변경내용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될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절대로 반환하지 않는다.
3. 변경에 따른 구비서류 및 기타 필요사항은 공연장이 정한 별도의 양식에 따른다.

제18조 (대관 해지 및 승인취소)

1. 대관 승인 이후 대관 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2. 대관 승인서에 명시된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3. 대관료를 납부 기일 내에 납부 하지 않았을 경우
4. 대관자가 본 규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제19조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1.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 또는 "극장"이 정한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극장"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 대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대관자가 관리 의무를 소홀히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4. 대관자는 "극장"이 대관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제3자로부터 청구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극장"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르는 법률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5. 대관자는 대관공연의 광고, 홍보물 불법 부착으로 인한 해당 관청의 벌금 부과 및 제재 조치로 인해 "극장"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대관자가 "극장"의 제반 부속시설(열쇠, 분장실집기, 비품)을 파손하였을 시에는 "극장"이 산정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20조 (입장권 발행)

1. 입장권 발행은 "극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모든 입장권은 공연장의 승인 후, 대관자 책임 하에 입장권 검인을 공연개시 30일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대관일 경우는 "극장" 측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2. 대관자는 입장권을 임의로 추가 또는 초과 발행할 수 없으며 "극장"은 사전 승인하지 않은 입장권을 소지한 관객에 대해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3. "극장"이 승인하지 않은 입장권 발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전적으로 대관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며 "극장"은 손해배상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대관자는 "극장"과 합의한 일정 수량의 티켓을 "극장"에 제공한다.

제21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1.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극장"과 관련된 사항들은 백암아트홀의 CIP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포스터 게시, 물품 진열, 판매대 설치 등 여러 사항들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극장"의 판단에 의해 불허할 수 있다.

제22조 (방송중계 협의)

1. "극장"에서 행해지는 공연을 녹음, 녹화 또는 방송을 할 때에는 "극장"의 승인을 얻어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중계위치, 기술사항 등에 관해서는 극장 측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이로 인해 관람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극장"은 필요좌석 판매를 유보할 수 있다.

제23조 (백암아트홀 옥내 광고 인정)

대관자는 "극장"이 운영하는 상업용 옥내 광고를 인정하여야 하며, 그 수량은 2개소 이하로 한다.

제24조 (규약의 효력 및 적용시기)

1. 본 규약은 당사자 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2. 본 규약은 2017년 3월 1일 이후 공연을 위한 대관계약부터 적용되며 매년 극장의 대관 목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5조 (규정 변경승인)

1.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더 필요한 사항이 요구될 경우 "극장"은 규정을 추가시킬 수 있다.
2. 규정의 변경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백암아트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변경된 규정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6조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극장"의 관련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 27조 (규정 위반 시의 책임)

이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8조 (관할법원)

이 규정에 따른 분쟁은 "극장"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